

7. 문화예술진흥기금

1. 기금개요

| | | | |
|------|--------------|--------|-----------|
| 설치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 | |
| 설치년도 | 1973년 | 운용개시년도 | 1973년 |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기금관리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관리방식 | 직접관리 | 위탁관리기관 | |

2. 평가결과 요약표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 개별사업 | 평가결과 | 근거 |
|------|------|-----------|
| | | 부적정사업 없음. |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 평가결과 |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
|------|---|
| 부적정 | 본 기금은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수입비중,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적정하지만, 중기가용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음. |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 평가결과 |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
|------|---|
| 존치 | 기초문화예술분야는 민간에 맡길 경우 사회적인 기여와 공헌도에 비해 소외되거나 과소 투자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공공부문의 지원이 필요함. 해당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들은 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함. |

3. 존치평가 총평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1973년 설치되었다. 기초예술 진흥을 위한 유일한 기금으로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예술가들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적·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계층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국제예술 교류 및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으로 한국문화의 세계화 및 수도권과 지역간의 문화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등 총 3개 단위사업과 7개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본 기금에서 운용하는 세부사업들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로 기금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본 기금은 입장료 수입, 예술극장 대여료, 경륜정정 수입금, 타기금 전입금 등의 안정적인 자체수입의 확보로 자체수입 비중 및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적정하며 중기가용자산은 과다하다. 따라서 기금의 적정규모를 초과하여 보유 중인 중기가용자산을 추가적으로 공자기금에 예탁할 것을 권고하며, 뉴서울 골프장은 향후 골프장 매각 가치의 하락, 사회적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기를 권고한다.
- 본 기금이 지원하는 기초예술분야는 직접적인 수익성을 넘어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며 사회에 제공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무형의 자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에서 지원·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예술가들이 본인의 예술성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이라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 본 기금은 2003년 말로 모금을 통한 재원마련이 중단됨으로써 자체수입보다는 타 기금 전입금 위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에 따라 타 기금에서 일부 사업들이 본 기금으로 이관되었으며 이관된 사업들을 기존 단위사업의 하위사업들로 편성하면서 사업들 간의 유기적인 체계가 약화된 측면이 있다. 기존에도 이미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었기에 이관으로 추가된 사업의 배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1] 개별사업의 적정성

1. 사업 설치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의 세부사업들은 모두 설치목적이 유효하다고 판단됨.
 - 현재 본 기금이 운용하는 7개 세부사업(예술창작지원, 예술인력육성,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역문화예술지원, 예술의관광자원화,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 문화예술향유지원)은 그 내용이 근거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금의 설치목적(「문화예술진흥법」의 제16조)이나 용도(「문화예술진흥법」의 제18조)에 부합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바 개별 사업들의 설치목적은 유효함.

2. 사업주체의 적합성

- 본 기금이 운용하는 7개 세부사업(예술창작지원, 예술인력육성,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지역문화예술지원, 예술의관광자원화,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 문화예술향유지원)은 기금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 본 기금의 세부사업들은 민간부문에서 수행하기에는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기초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함. 기초예술분야가 비록 수익성을 담보하지는 못할지라도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감안한다면 공공부문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또한, 기초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은 특정 목적성을 가지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기금에 의한 별도 관리가 타당함.
- 다만, 내역사업까지 들어가보면 원로문예인복지지원사업은 기금 수행사업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일몰 시 기금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원로문예인복지지원사업은 사업 성격상 현재 대부분의 예술인 복리후생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평가됨.

- 본 기금의 원로문예인복지지원사업의 경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과거에 수행하던 사업을 추가지원 없이 남아 있는 지원대상자 15인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일몰될 예정임.

- 따라서 엄밀하게 볼 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최종 폐지 시까지 잔여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이미 정리과정에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이관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계획대로 일몰되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함.

3.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본 기금이 운용하는 7개 세부사업(예술창작지원, 예술인력육성,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지역문화예술지원, 예술의관광자원화,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 문화예술향유지원)은 예산·타기금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없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단위 : 백만원, %)

| | | | | |
|------------|-----|---------|----------------|---------|
| 자체수입비중 | | 71.9% | 차입금 및 정부내부수입비중 | 22.1% |
| 기금 적정규모 | MIN | -44,121 | 순자산 | 602,681 |
| | MAX | 24,463 | 중기가용자산 | 463,757 |
| 부채/자산 | | 10.7% | | |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수입비중도 적정함.
 - 본 기금은 입장료 수입, 예술극장에 대여료, 경륜경정 수입금, 타기금 전입금 등으로 구성된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본 기금의 분석기간(2015년 ~ 2022년) 동안 경상지출 대비 자체수입 비중은 71.94%로 적정한 수준임.
 - 본 기금의 분석기간 동안 경상지출 대비 자체수입 비중은 71.94%로 적정하며, 2015년 자체수입 비중이 36.49%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2년 81.28% 까지 증가하고 있음.
 - 본 기금의 자체수입액 중 사업관련수익은 큰 변동성이 없는 반면, 민간출연금, 경륜경정수입금, 체육기금 및 관광기금 전입금이 증가하여 자체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 본 기금의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적정함.
 - 차입금은 없으며 정부내부수입은 복권기금전입금(공익사업)으로 구성됨.
 - 총수입에서 정부내부수입 비중은 2019년 36.00%이며, 분석기간 평균은 22.11%로 나타나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적정함.

- 기금의 수입재원은 경륜경정수입금, 체육기금, 관광기금의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기금의 목적사업과의 연계성이 낮음.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규모는 과다함.
 - 기금의 적정규모는 최소기준 174,818백만 원과 최대기준 269,882백만 원으로 나타나지만 복권기금 공익사업을 위한 전입금 및 반납금, 사업비지출을 조정할 경우 기금의 적정규모는 최소기준 -44,121백만 원, 최대규모 24,463 백만 원으로 평가되며, 중기가용자산은 463,757백만 원으로 적정규모의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함.
 - 중기가용자산규모가 과다로 나타난 주된 이유는 유형자산 중 뉴서울골프장 부지 및 식당, 연습장 등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뉴서울골프장의 순이익 및 자본적지출을 고려할 때 매년 50억원 수준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 골프장의 매각가격, 저금리 기조의 유지 등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골프장에 대한 운영을 통한 재원조달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기금의 사회적 공헌, 향후 골프장 가치의 하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 시점, 매각 가격 등을 판단하여야 함.
 - 장기대여금은 서대문구 홍은동 주상복합 개발사업관련 대여금, 광주 봉선동 아파트개발사업관련 대여금,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대여금으로 구성이 되어있음.
 - 광주 봉선동 아파트개발사업관련 대여금은 하자보수를 위한 신탁사 예치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충당금을 쌓아놓았음. 해당 사업은 기금의 목적사업과 연관성이 낮고, 사업이 종료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으로 해당 채권에 대해 제각하는 것을 권고함.
 - 또한, 서대문구 홍은동 주상복합 개발사업은 PF에 투자하여 대물변제로 26개동의 상가를 수령하여 SPC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음. 기금의 여유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수익을 기금으로 전입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SPC의 임대수익을 기금의 수익으로 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기금의 적정규모를 초과하여 보유중인 중기가용자산을 추가적으로 공자기금에 예탁할 것을 권고함.

- 본 기금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0.66%로 낮은 수준이며, 부채에는 차입금이 없어 채무 불이행위험은 낮음.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이러한 기금목적은 여전히 유효함.

- 본 기금은 문화예술의 영역 중에서도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 본 기금의 지원 대상인 기초예술은 예술분야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실현되는 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응용예술에 비하여 상업성도 낮은 편이어서 민간부문에서 그 사회적 영향력에 맞게 충분히 관리하기 어려운 영역임. 또한 문화예술분야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이 제공되도록 지원해야 하므로 공공부문 중에서도 기금의 형태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타 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명칭상으로는 영화발전기금과의 중복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본 기금에서는 지원분야에서 영화나 영화와 관련한 영역(시나리오 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어 타 기금과 실제 운용상의 중복성 및 유사성은 우려할 것이 없음.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본 기금은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지원과 저소득 예술인의 활동·복지 지원 및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세부사업인 문화예술향유지원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발급하고, 전국 소외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공연 프로그램(신나는 예술여행)을 제공함.

- 세부사업인 예술인생활안정자금사업을 통해 저소득 예술인들의 생활안정 및 주거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으며,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사업이나 현장예술인력지원사업 등의 내역사업을 통해 신진 예술가의 일자리를 지원함. 원로문예인복지지원사업에서는 은퇴한 취약 예술가들의 복지를 지원함.
- 내역사업인 문화예술기부활성화사업을 통해 기부플랫폼을 구축하고 문화예술 후원 클라우드펀딩을 도입하는 등 나눔의 가치 확산을 위해 직접적으로 활동하고 있음.